

## 한국에서의 기사취재현실과 그 문제점

이혜복 전 KBS 해설주간

현실적으로 기사취재과정에 적지 않은 문제점이 내재해 있다는 점은 부인 못할 사실로서 진실보도를 위해 최선을 다했을 경우라도 결과적으로 착오를 범해 본의 아니게 오보를 냄으로써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사례 또한 없지 않을 것이나 취재의 신속내지 윤리인식의 미숙 등 문제점 때문에 빚어진 결과일 수도 있다고 본다... 언론·출판의 자유가 보장된다 하더라도 그 남용은 표현의 자유로는 인정되지 않는 내재적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기사취재에 있어 사건기사의 경우 일차적으로 명예훼손을 범하지 않도록 일선기자가 세심한 배려를 해야 될 것이며, 그 다음 데스크에서 또 한번 그러한 배려로 만의 하나라도 착오가 여과돼야 될 일이며, 최종적으로 제목이 기사내용과 빗나가지 않도록, 「비약」하지 않도록, 냉정한 판단을 내려야 될 것으로 본다.

### I. 머리말

헌법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함과 아울러 국민 개개인이 가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등 불가치의 기본적 인권도 보장하고 있으나 「언론이 공적 책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방해받지 않는다」는 언론자유 원칙에 충실하다 보면 그것이 지나쳐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빚는 관례 또한 왕왕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언론과 국가기관과의 사이에 발생하는 법적 문제와는 별도로 일반국민과 언론매체와의 관계를 조명해 볼 때 명예훼손, 또는 사생활 침해 등 법률적 문제로 신문·방송 기타 대중매체가 법적 제재를 받거나 손해배상을 지불해야 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이와같은 현상은 한국 특유의 관례라고만 볼 수 없는 것이 선진외국의 경우도 그와 같은 언론매체와 시민사회 사이에서 야기되고 있는 보도내용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점점증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 추세인 것 같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에서도 최근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사유로 언론매체를 상대로 해서 형사책임을 묻도록 당국에 제소하거나 민사적 보상을 요구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 그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들도 시민으로서의 권리 의식이 높아진 증거이자 이제까지 거대한 언론의 위력 앞에 위축돼 있던 개인이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각종 제도적 장치가 확립된 데 대한 당연한 반응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기사취재과정에 적지 않은 문제점이 내재해 있다는 점은 부인 못할 사실로서 진실 보도를 위해 최선을 다했을 경우라도 결과적으로 착오를 범해 본의 아니게 오보를 냈으로써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사례 또한 없지 않을 것이나 취재의 신속내지 윤리의식의 미숙 등 문제점 때문에 빚어진 결과일 수도 있다고 본다.

진정한 의미의 언론·표현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볼 때 바로 이점이 문제가 되는 것이며 개선을 요하는 점으로 지적돼야 할 것이다.

## II. 우리나라 법률에 보장된 기사취재권과 국민의 권리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조문(제 20 조)이 「정보의 자유」까지를 내포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가 「의사표현의 자유」만을 말하는 것인지, 의사표현을 받아들이는 자유, 즉 「읽을 권리」와 「알권리」도 포함하는 것인지 우리헌법 관계조문만 가지고서는 한마디로 인정하기 어렵게 돼 있으나 「알 권리」 즉 「정보의 자유」는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을 위한 전제로서 민주정치의 필수불가결의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 헌법상에서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물론 알 권리는 모든 국민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기 때문에 결코 보도기관의 특권으로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알 권리는 정보의 수용, 취득, 선발권을 포함한다고 본다」<sup>1)</sup>는 것이 관계학자들의 견해이다.

무엇보다도 언론기본법에 「모든 국민은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알 권리를 방해받지 아니한다」(제 2 조 1 항)고 규정함으로써 언론기관의 정보청구권이 보장돼 있다.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는 신문, 통신의 발행인 또는 방송국의 장이나 대리인의 청구가 있을 경우는 공익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바」(동법 제 6 조)고 되어 있어 기자는 공익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즉 기사취재권이 보장되었다고 볼 것이다.

물론 정보를 제공하되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규정에 위배될 때, 더 중한 공익 또는 보호할 사익이 명백히 침해될 때 등등…」(동법 제 6 조 1 항~4 항) 몇가지 예외 사항도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취재의 자유 역시 법적인 면에서 볼 때 한계는 있는 것이다.

이처럼 언론의 정보청구권과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가 기자의 취재활동에 있어 어떤 상관관계를 형성하느냐 하는 점이 매우 미묘하고 양자의 이익이 상충될 때 불가피한 문제가 생기게 마련이며 원만한 해결을 못 볼 때 궁극적으로는 법에 호소하게 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우선 여기서 기본적인 국민권에 관해서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 ● 개인 명예보호권

헌법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제 20 조 2 항 전반)고 규정, 이의 남용을 규제하고 아울러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할 때 피해자는 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동항 후반)고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고 있다.

이와같은 헌법정신은 언론기본법 「언론의 공적 책임에 관한 조항」(언기법 제 3 조 3 항)에 명문조항을 다시 두고 있다.

따라서 언론·출판의 자유가 보장된다 하더라도 그 남용은 표현의 자유로는 인정되지 않는 내재적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때문에 언론자유의 내재적 한계를 넘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했을 경우, 민법상의 불법행위가 되니 우선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에 응해야 되고 아울러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적 책임까지도 면할 수 없게 된다.

다만 보도된 내용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결과를 빚었을 경우라도 그것이 「진보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만을 위한 것인 경우」에는 면책된다고 형법에 규정하고 있다.

## ● 사생활권

사생활권 즉 「사사로운 일을 대외적으로 공개 당하지 않는 권리」(right to be alone), 또는 「남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은 사생활의 비밀을 지키는 권리」, 흔히 「사생활의 권리」는 「1890년의 Warren-Brandeis의 논문 이래 독립된 권리로 인정됐는데 미국에서는 판례법상 인정되게 됐고 그 근거는 행복권을 추구하는 권리에서 찾고 있다. 독일에서는 일반적인 인격 속에 사생활의 권리가 내포돼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제 5 공화국헌법 제 16 조에서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 이를 명문화했다」. B) 명예훼손은 개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 성립의 요건이 되지만 사생활의 경우, 사회적 평가와는 관계없는 것으로 사회적 평가가 높아졌을 때 오히려 사생활의 침해가 될 수 있다.

예컨대 공개된 내용이 사회적으로는 칭송받을 만한 일이라도 그와 같은 사실이 공표되는 것을 원치 않아 오히려 그것이 당사자에게는 심리적 고통을 주는 결과를 빚었을 경우, 그것은 사생활의 침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명예훼손의 경우는 그것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될 경우 진실보도라는 것이 증명되면 면책이 되나 사생활의 경우는 진실의 증명으로 면책되기는커녕 오히려 사생활의 침해는 가중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이 명예훼손의 경우와는 판이하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음에 그것이 범죄가 되느냐? 하는 점에 있어 미국의 경우 주에 따라 입법으로서 범죄로 규정한 곳도 있으나 이를 일본의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가 된다고만 해석되고 있어 명예훼손이 민형사 양면에서 규제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다.

또 명예훼손의 경우, 죽은 자(망자)의 경우, 그것이 허위가 아닐 경우는 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으나 사생활의 경우 「사망과 함께 그것이 소멸되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명치 않아 미해결의 법적 과제로 남아 있다.

끝으로 법인의 경우, 명예훼손은 어느정도 고려될 수 있으나 법인에 대한 사생활이 있을수 있느냐? 이 점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최근 흔한 공해문제보도등에서 산업폐기물 정화시설을 버젓이 차려놓고서도 그것을 대외적인 눈가림으로만 봐두고 탄 비밀장치를 통해 정화 안된 오염물질을 마구 방출한다던가 하는 공해산업에 관한 이면이 보도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이를테면 이들 법인들의 사생활이 침해됐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럴 경우 사생활침해라고 들고 나올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한가지 지적해야 될 것은 정치인, 저명한 연예인 또는 그밖의 사회적 지명도가 높은 지도급 인물 등등의 경우, 그런 유명인들의 사생활은 일반 개인의 사생활과는 어느정도 구별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관례로 돼 있는 것 같다.

유명인사이기 때문에 일반인과는 다르게 사사로운 일까지도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돼서 이른바 「유명세의 희생」을 어느정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 ● 신용보호권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그 밖의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으로 다스리는 조항(제 313 조)를 두어 개인의 신용보호권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기사취재의 착오로 개인의 신용을 훼손하는 보도를 했을 경우에는 역시 법적 책임을 면치 못하게 된다.

#### ● 인터뷰 거부권

공공이익을 위한 기사취재에 당하는 기자는 모든 사실을 확인하자면 결국 필요한 자료 수집과 함께 그 자료와 관련되는 관계인물을 만나 확인해야 되고 관련인사의 책임있는 설명을 직접 들어야 한다. 따라서 인적, 물적 확인은 기사취재에는 떼놓을 수 없는 요건 중의 하나이다.

때문에 기자는 누구와도 만나야 되고 인터뷰를 청할 권리가 있다고 보아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면접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국민의 알 권리를 대변하기 위해 공적인 면담을 요구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그 대상이 일반 개인일 경우(물론 공적 인물일 경우도 경우에 따라서는 적용될 수는 있지만) 인터뷰를 거부할 권리도 있다고 본다.

헌법 제 18 조에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헌법조항은 「'내면적인 사상과 양심을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되지 않는 자유'와 '자기의 사상과 양심에 반하여 행위를 강제 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말하는 것으로 사상 및 양심의 자유 중에는 '침해의 자유'까지도 포함해서 이해해야 될 것이다.

'양심의 표현의 자유'를 헌법 제 20 조에 관한 문제로 볼 때 '침해의 자유'는 헌법 제 18 조에 속하는 문제로 볼 수 있고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헌법 제 11 조 2 항)는 '불리한 진술의 거부권'과는 구별되는 개인의 권리」<sup>3)</sup>로써 인터뷰를 거부할 권리도 보장돼 있다고 봐야 될 것이다.

#### ○ 사진촬영거부권

기사취재에 있어 카메라에 의한 무단촬영에 관해서는 이른바 초상권의 문제로써 고려되어야 한다. 초상권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조문으로서는 규정된 바 없으나 역시 헌법 제 16 조에 규정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내용에 해당하는 부문으로 봐야 옳다.

본인의 허락없이 남의 사진을 찍어 공개·배포하는 것은 그것이 보도를 위한 것이라도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임은 말할 것도 없다.

신문지면이 확장돼 사진 게재량이 늘어나고 특히 TV의 경우 영상보도가 필수요건이기 때문에 이 초상권 문제는 날로 복잡해질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데모행진의 사진취재 또는 국회개최 중 어떤 중요대목에 관련되는 특정 정치인의 표정을 크로즈업해서 카메라에 담았다든가 할 경우, 그것이 당사자의 허락을 얻지 않고 촬영·보도했다고 해서 초상권침해라고는 주장할 수 없을 것이다.

최근 일부 대학생들의 데모현장을 촬영하던 보도기자들이 카메라를 탈취당하거나 필름을 뺏기는 등 곤욕을 당한 예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데모저지 전투경찰의 활동 상황을 카메라에 담으려다가 승강이를 벌여 항의사태까지 나온 예도 있었으나 「사회의 제반현상과 뉴스를 독자나 시청자들을 위해 정확 공평하게 보도하려는 보도기관의 사명에 비추어 볼 때 당연히 사회적으로 허용된 정당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른바 초상권의 이념만으로 그와 같은 취재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권리의 남용이라고 평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이웃 일본에서는 나와 있다는 점이 참고가 될 것이다.

#### ● 수색영장에 의하지 않은 불법주거침입에 대한 제소권

주거의 자유에 대해서는 헌법 제 15 조에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고 명문으로 규정돼 있으며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압수 또는 수색영장에 의하지 않는 한, 거주자의 승낙없이 또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그 주거에 들어갈 때 그것은

주거침해가 되며 주거자나 관리인의 승낙이 있다 해도 불법행위를 하러 들어갈 경우는 진정한 승낙이라고 볼 수 없다.

물론 주거라고 하는 뜻은 현재 살고 있건 말건 사람이 거주하기 위해 점유하고 있는 일체의 시설, 즉 학교·회사 여관의 객실·사무소 등도 주거에 속하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없이 주거에 침입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에 규정된 주거침입죄가 구성되기 때문에 피해자는 제소할 수가 있는 것이다.

기사취재를 위해 때로는 거주자의 승낙을 기다리지 않고 또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기자가 일방적으로 그 주거에 들어가야 할 경우도 생각할 수 있으나 엄격한 법적 한계를 따질 때 그것은 주거침입이 되는 것이다.

이상 법률에 보장된 기사취재권, 「알 권리」를 행사해서 보다 정확한 사실, 즉 진실을 캐내려는 기자들의 취재활동과 국민 각자에게 보장된 기본적 권리를 지키려는 개인의 이익이 상충되는 실제상황이 허다하게 전개될 수 있다는 데서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면 기자들의 정보원 접근의 관행과 일반적인 취재유형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다음에 살펴 보기로 하자.

### III. 기자의 정보원 접근의 관행과 일반적 취재유형

일반적으로 기자들의 취재활동은 각 담당분야별(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 과학 등)로 분담된 취재대상(해당 분야별 관계기관, 단체, 조직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물)을 중심으로 취재활동을 펴 나가게 마련인데, 기사자료를 입수하기 위해 정보원에 접근하는 방법은 통상적으로 담당 출입처의 기자실(출입기자실)을 근거로 취재활동에 나선다. 그럴 경우 우선 홍보관계자와의 접촉에서부터 취재는 시작된다.

물론 취재대상의 규모가 작아 기자실이 따로 설치돼 있지 않고 대외홍보기구도 마련돼 있지 않을 경우 직접 책임자 또는 관련인물을 만나야 되지만 대개 기자실이 있고 또 근래에는 각 기관, 단체, 조직만큼 홍보기구를 두어 수시로 기사자료가 될만한 이른바 홍보자료를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제공하기 때문에 기자들은 독자적 취재와 병행해서

홍보기구를 통해 공표된 자료를 재확인·보완하는 방식으로 취재에 완벽을 기하고 진실보도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 사건기사의 취재

여기서는 취재의 모든 유형을 전반적으로 관찰할 지면의 여유도 없고 또 특히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또는 초상권 침해, 혹은 취재와 관련되는 주거침입문제 등이 야기되기 쉬운 이른바 사건인사취재에 초점을 맞춰보기로 한다.

물론 사건기사란 범죄사건보도를 말하는 신문 용어이나 그 범위가 매우 넓고 다른 전반적인 취재의 경우 역시 이와 비슷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취재유형과도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수사당국에서 범인들을 추적, 체포한 후 조사해서 범증이 확연할 때, 관계조문을 적용, 증거물건과 함께 수사기록을 검찰에 넘기면 검사의 손을 거쳐 공소 여부가 결정되고 공소가 제기되면 다시 재판에 회부, 지루한 심리과정을 거쳐 유·무죄의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는 꽤 오랜 시일을 요하게 된다.

사진기자는 범죄의 배경, 범행동기, 그 이면에 읽힌 범인들의 인간상, 또 체포, 수사경위에서 최종판결이 날 때까지를 지켜보면서 추적 취재하는데 오랜 시간과 집념어린 취재노력 끝에 비로소 사건의 전모를 샅샅이 파헤쳐 완벽한 자료를 통해 진실을 보도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범죄사건보도는」 그것이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사람(피의자…… 흔히 신문 방송에서는 용의자라고 말함)의 범죄행위」로, 바꿔 말해 경찰과 검찰에서의 수사진전 내용을 보도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범죄수사는 일차적으로 사법경찰관이 담당하는 것이고 검찰은 수사의 주체로서는 제 2 차적인 것이라 볼 수 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 검찰이 처음부터 수사에 나서는 사건도 있을 수는 있다.

그것은 대개 매우 법률적인 지식을 요하는 사건, 말하자면 경제관계 사건이라든가, 또는 극히 정치적인 사건, 즉 고도로 정치와 결부된 사건, 예컨대 국회의원에 의해 의사당

안에서의 폭력 또는 의사진행 방해사건 등은 경찰을 걸치지 않고 검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하는 수가 많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범죄수사는 사법경찰관이 맡게 되며 이미 발생한 범죄를 수사해서 범인을 체포, 증거를 수집하는 등 형사재판의 준비를 하는 이른바 진압경찰의 임무를 담당하는 것은 사법경찰관이고, 그밖에 사회공공의 위험을 방지 또는 제거하는 예방경찰 역할을 담당하는 행정경찰이 있어 방법활동, 교통단속, 가출인보호, 심지어 유실물 취급까지 담당하는 데 이들 행정경찰의 활동내용도 경우에 따라서는 취재대상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범죄수사의 경우 우선 경찰에서 착수, 공소제기 여부를 검찰에서 최종결론을 내리지만, 검찰은 일정한 범위 안에서 경찰에 대해 지시하고, 수사지휘할 권한은 있으나 상명하복의 관계라기보다는 협력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잠깐 경찰과 검찰관계에 대해 언급했으나 신문과 방송을 막론하고 대개 정찰과 경찰에 기자들을 분담 · 배치시키는 것이 통례이다.

서울의 경우를 예로 든다면, 각 사에서는 시경찰국에 대개 10명 미만의 기자들을 배치하는데, 시경에 근거를 두고 각 경찰서를 담당하는 기자들을 지휘하는 고참기자에게 경찰취재 책임을 맡겨 종합취재 활동에 나서게 한다. 이처럼 많은 기자들을 경찰에 배치하는 까닭은 역시 범죄 기사, 즉 사건기사보도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검찰청의 경우 법원의 재판관계기사까지를 합쳐 커버하기 위해 2~3명 내지 3~4명의 기자, 경찰기자보다도 좀더 경력이 있는 기자들을 배치하는 경향이다. 왜냐하면 검찰이나 법원은 좀더 법률적인 지식과 일선경찰보다는 좀더 취재경험이 많은 기자들이라야 취재를 하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신문의 경우 사진기자까지 경찰에 상주하는 예는 드물지만 방송, 특히 TV의 경우, 영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카메라맨이 취재기자들과 늘 행동을 함께 하기 마련이다.

#### ● 사건취재와 법적 제약

범죄행위를 보도함에 있어서 정확한 기사취재로 진실을 보도했고 또 그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 일 경우 면책의 사유가 되지만 역시 「언론 · 표현의 자유」와 「기타의 자유」의 이익이 상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취재상 제약을 받기 마련이다.

예컨대 명예훼손의 제약, 사생활권의 침해문제, 공무원법이나 형사소송법에 따른 수사상의 비밀문제, 소년법에 따른 기사게재 또는 방송금지 규정 등이 바로 취재상 벽이 될 수 있는 법적인 제약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명예훼손이나 사생활침해문제가 보도된 결과로써 생기는 사후의 규제임에 반해 수사상 비밀 등은 취재를 할 때의 제약 즉 사전의 제약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범죄수사 자체가 매우 곤란한 작업으로 범인이 비밀리에 진행된 범행을 사후에 증거에 의거, 추적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관조차도 애를 먹기 마련인데, 직접 수사를 하는 것도 아닌 기자가 범행진상을 보도하는 것은 더욱더 곤란한 작업 일 수 밖에 없다.

결국 기자는 수사를 합당한 기관에서 자료를 입수해서 거기 살을 붙여 보도하는 간접취재이기 때문에 수사비밀을 지키려는 수사관으로부터 비밀을 캐내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수사상 비밀」이라는 벽 앞에서 사건 취재기자들이 당혹할 때는 실로 한 두번이 아니다. 효과적인 수사진행을 위해서 수사관은 비밀리에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당연할 뿐더러 거기 수사대상에 오른 사람들의 명예나 사생활의 문제에 덧붙여 유·무죄를 판정할 단계도 아니기 때문에 용의자라도 개인의 인격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수사관이라면 누구나 생각하는 일반적인 수사상 원칙으로 돼있다

공무상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공무원법을 방패로 취재기자들의 끈질긴 추궁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순순히 취재기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 해서 무조건 닳할 것도 못된다.

더구나 요즘 매우 활발해진 각 기관의 홍보활동은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예외일 수 없어 오히려 기자들의 뉴스 소스 접근을 가로막는 점이 없지 않다. 예컨대 경찰에서 발표할 때는 치안본부장 또는 시경국장, 경찰서장(수사본부를 두었을 때는 수사본부장) 등 또는 상급간부의 지시를 받은 담당자 또는 홍보관계담당관만이 정식 발표를 할 수 있도록 짜여져 있어 「비공식 발표」의 취재는 자유라고 하지만 사실 자유취재의 폭은 좁아진 것이 실정이다. 비공식적인 수사담당자의 견해를 기사화했을 경우 보도 이후에 그것이 명예훼손 문제를 야기 했을 때 면책입증이 어렵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전 같으면 형사가 용의자를 앉혀놓고 취조하는 현장에 붙어 앉아 사건경위를 직접 취재할 수 있는 상황도 있긴 했으나 요즘엔 통제구역이 있어 그전처럼 조사현장에 끼어들기도 힘들고 또 경찰무선통신을 엿듣는다든가 경찰 어느 방이고 무상출입 하던 자유도 제한된 상황 아래서 취재활동은 매우 힘들게 된 것이 현실이다.

기자들의 수가 늘어난 점, 또 홍보활동이 활발한 점 등 이유도 있으나 어쨌든 사진기자들의 취재활동을 가로막는 벽이 많이 생겼다. 뿐만 아니라 수사상 지장을 줄 것을 염려한 나머지 수사비밀을 확보하기 위한 과잉조치로 기자들에게 헛 정보를 흘리는 경우(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보도는 혼란에 빠지기 마련이다. 이럴 경우는 결과적으로 취재방해가 된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수사당국의 발표만 기다리고, 발표내용에만 의존하다 보면 그야말로 사건기자는 할 일이 없게 된 바(그것은 바른 모든 부문을 담당한 기사취재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기자들은 독자적인 취재, 발표 이면에 숨어있는 발표 안된 부분, 독자나 시청자들이 궁금해 하고 관심을 갖는 부분을 파고들어야만 하고 여기서 사건주변인물, 관련사항에 대한 탐문취재, 그리고 예리한 기자적 분석능력을 발휘해서 보다 정확한 진상을 파헤치기 마련이다.

사실 흉악범죄의 경우 수사 진전상황, 범인의 행적 등에 관해 수사담당자들과는 또 다른 측면에서 사건 이면을 분석, 추적, 보도할 때 오히려 수사진전에 큰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점은 앞서 서울 영동 모 룸살롱에서 있었던 폭력관계 4명 살해사건 경우만 봐도 관련 범인들의 사진과 함께 밝혀 사건개요를 공개보도함으로써 저들이 도피할 수 없다는 체념 아래 빨리 수사당국에 출두한 예를 보아도 오히려 수사비밀을 엄수하는 것보다 때로는 보도진과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는 것이지만, 특수한 예를 빼고는 그렇게 취재기자들에게 협력적일 수만 없는 것이 수사담당자들의 기본자세이다.

여기서 많은 문제들 특히 공익을 위한 보도가 성급한 보도자세 또는 지나친 기자의 정의감의 발동 등으로 자칫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과오를 범하기 쉽다.

정보원에 접근하는 관행, 일반적인 취재유형은 신문이나 방송의 경우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방송의 경우는 신문이 겪어야 할 취재상 단점에 몇 가지가 더 첨가된다고 봐야 될 것이다.

그것은 TV의 경우 Radio가 필요로 하는 소리(음성)와 함께 영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문기자들이 글로 써서 끝낼 수 있는 대목을 직접 관련자의 육성도 넣고 움직이는 영상도 필요하다는 점에서 수사당국의 금기를 깨고 용의자 앞에 마이크를 들이대거나 숨어서 카메라를 돌리거나 무리하게라도 사건관련자 앞에 카메라를 겨냥해야 되는 어려움이 곁들여지기 마련이다.

잡지의 경우는 물론 독자적인 취재가 기사의 주류를 이루게 되기 때문에 무미건조한 발표내용에만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은 신문이나 방송의 경우보다 오히려 더하기 때문에 신문

· 방송에 보도되지 않은 좀더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사건의 배경이나 관련인물들의 비밀스런 행적까지도 캐내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그것이 과잉표현될 경우(특히 일부 흥미본위의 주간지의 특정기사의 경우) 명예훼손, 사생활침해, 초상권침해 등 갖가지 문제를 아울러 야기할 위험도가 매우 높다.

사회고발문학 등 프리랜서의 경우, 어떤 사적인 문제를 모델로 삼아 사회고발적인 작품을 형성할 경우에 그 잡다한 사회현상의 모든 것을 다 혼자서 직접 확인취재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물론 진실한 의미의 사회고발문학 등 사회의 어떤 단면을 파헤쳐보자면 작가 자신이 현장에 뛰어들어 눈과 귀로 확인하는 열의가 있어야 마땅하지만 그렇다 해도 신문, 방송에 보도된 내용들을 크게 참고자료로 해서 말을 붙여 작품을 구성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

그럴 경우, 신문, 방송에 보도된 내용 자체가 명예훼손이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일 경우 그 결과에 대한 병적 책임까지도 신문·방송에 미룰 수는 없는 것이기에 말 못할 어려움이 뒤따르며 이 점이 바로 신중을 기해야 할 점이 아닐까 생각한다.

4·19 이전 서울신문에 연재되어 인기가 컸던 정비석 작 소설 「자유부인」의 경우 그것이 당시의 사회상을 묘사한 어떤 면에서는 고발문학의 성격도 먼 것이었는데, 당시 등장인물 가운데 대학교수의 행태가 교수의 품위를 그르치는 내용이라 해서 서울대학교 황산덕 교수와 작가 사이에 지면을 통해 명예훼손 여부를 두고 공방전이 펼쳐졌던 것은 아직도 기억에 새로운 실례이다.

물론 법적인 문제까지로 번지지도 않았고, 그럴 정도의 내용도 아니었으나, 사회고발과 관련돼 문제가 제기됐던 한 개의 좋은 유형으로 지적될만한 예였다.

어떻든 이상 언급한 대로 기자들은 정보원에 접근함에 있어 많은 벽을 넘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취재표현의 자유와 상충되는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기 쉬운 솔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 위험을 범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 빈틈없는 취재를 해야만 된다는 어려움을 이겨내야만 된다.

#### IV. 기자들의 취재윤리 의식

기자의 임무는 진실을 추구해서 정확한 기사를 보도하되 그것이 공익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물론 저속한 흥미위주의 내용으로 일부 독자들에게 영합하는 행위여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것은 재언할 필요조차 없는 일이다.

범죄수사의 경우 수사책임자 홍보담당자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수사경위, 영장집행, 사건처리 등 수사전망에 관해 정식발표를 할 수 있으나, 수사관계자는 피의자 기타사건관계 참고인의 명예훼손 등 관계자에게 불필요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피의자로 단정할 수 없는 단계에서 그 성명을 특정혐의로 발표한 경우 또는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되고 편법인지를 입증할 특출한 증거도 없는 단계에서 진범인으로 단정 공표할 경우도 있다. 그럴 때는 발표한 측에도 책임은 있지만 보도기관이 수사당국의 공표내용이라 해서 그대로 범죄용의에 관한 기사로 보도했을 때 후일 그 용의점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을 경우 「수사당국의 공표」에 의존 보도했다는 변명만으로 보도기관의 기자가 형사적으로는 면책될 수 있을지라도 도의적 책임은 면할 수 없을 것이다.

한번 수사단계에서 범죄용의자로 보도됐을 경우 형사소송절차상으로는 무죄의 추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는 이미 범죄자로 낙인찍혀 유죄의 추정을 받는 결과가 되고, 후일 불기소처분 또는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그전의 모든 내용이 전연 오보였다는 것이 밝혀진다 해도 그 명예를 회복하기는 매우 어렵게 된다.

가장 좋은 예를 하나 들라면 역시 4·19 이전 이른바 「한강독 여인 살해사건」의 사건진범으로 구속돼 경찰당국에서 사건내용을 공소, 범인으로 단정, 각 신문 사회면 통으로 보도했던 대구 모 고등학교 교사가 후일 진범이 체포됨으로써 누명을 벗은 사실이 있었다.

당시 각 신문에 통으로 사진을 곁들여 사건내용이 보도됨으로써 누명을 썼던 교사는 학교에서는 추방되고 사건이 해결돼 무고했음이 밝혀졌어도 직장에 복귀할 수 없는 어려운 지경에 있다는 내용이 다시 그 훨씬 후 신문에 보도되긴 했지만, 바로 그 사건은 보도기관을 통해 공표된 흉악범의 범인은 좀처럼 벗겨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뚜렷이 증명해줄 좋은 예였다.

특히 근년에 「원효로노파 살인사건」(홀로 사는 돈 많은 노파) 범인으로 구속기소됐던 고모여인의 경우 신문에 연일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고여인이 흉악한 살인범으로 체포돼 재판을 받게 됐으나 결국 최종판결에서 무죄가 확정돼 방면됐을 때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완전히 파산상태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 짙막하게 후문으로

보도됐지만 그것으로 고여인의 무죄가 청산될 수는 없지 않은가 하는 점에서 또 하나 심각한 실례였다.

그러나 특정인을 범죄용의자로서 보도되는 것은 공연한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이고 원칙적으로 형법상 명예훼손죄, 민법상 불법 행위에 해당하지만 보도기관이 면책되는 것은 보도의 목적이 전적으로 공익을 도모함에 있기 때문이고, 또 그 사실이 진실임이 증명돼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삼고 있다.

아울러 「진실로 증명되지 않더라도 행위자에 있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면책범위가 매우 넓어지고 보도의 자유는 그만큼 실질적으로 확장돼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도의적인 면에서 볼 때 무고한 사람을 흉악범으로 낙인찍어 보도하거나 그 정도가 아니더라도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 등 개인의 인격권을 손상케 하는 보도행위는 범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다.

특히 신문윤리강령(5. 타인의 명예와 자유) 신문윤리실천요강(타인의 명예와 자치), 그리고 보도기준(10개 항목)을 엄격히 준수하는 기자로서의 윤리의식에 투철해야 될 것이다.

## V. 기사취재 방법의 역기능적 측면

사건기사취재에 있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될 것임은 말할 것도 없고 보도기관을 대표해서 정보원에 접근할 권리가 부여된 기자일지라도 그 접근방법에 있어서는 기자로서 응당 지켜야 할 품위를 유지하고 신속보도에 치우친 나머지 졸속 취재로 오보를 내는 과오를 범하지 않고 항상 진실보도에 전념함으로써 공익을 위해 진력하는 보도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가야 될 것이다.

●명예훼손 특히 사건기사취재에서 범하기 쉬운 것이 명예훼손 관계라고 볼 수 있다. 대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이전에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는 혐의자는 참고인, 또는 중요 참고인으로 호칭 보도하는 것이 상례이고, 그럴 경우 그 본명은 밝히지 않는 것이 마땅하나 누가 봐도 움직일 수 없는 물적 증거 또는 현행범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는 방증 등이 있어 수사당국에서 범인으로 인정했을 때 비로소 본명을 밝히는 것이 순서라고 본다. 이웃 일본의 경우 파렴치범이 아닌 선거법위반, 정치관계범죄 등은 경칭 또는 직책, 직업을 병기하나

이미 범죄용의자로 판정됐을 때 경칭을 약하는 것이 통례이지만 우리나라의 보도기관에서는 강도범에 대해서도 경칭(씨)을 쓰는 식으로 유죄판결 이전의 피의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경칭을 쓰고 있는 것은 인권옹호의 측면에서 취하고 있는 조치이다.

어떻든 신속한 보도를 위해 범죄용의가 확인치 않은 단계에서 피의자의 본명을 성급하게 보도하는 행위, 어떤 범죄용의를 단정적으로 보도하는 행위, 또 현재 수사대상에 오른 범죄혐의와 관계없는 전과 관계를 사려없이 보도하는 것은 엄격히 말해 인권옹호상 삼가야 할 점이라고 본다.

물론 폭력만사건의 폭력전과 등 그 범죄가 갖는 사회적 배경을 알리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 전과를 밝힐 수도 있으나 범행과 관계없는 전과까지를 밝히는 것은 가혹하며 인권옹호상 일정기간이 지난 후 전과는 호적기록상에서도 소멸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에서 본다면 더군다나 그렇다고 할 것이다

부녀폭행사건 피해자의 경우 당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위해서 그 이름을 익명으로 해야 될 것임에는 그것을 가명으로 하면서도 그 주소 또는 직업 등을 보도, 쉽게 본인임을 주변관계자들이 알 수 있을 정도로 보도하는 예가 간혹 있는데, 이 역시 신중한 보도자세가 필요하다

영국신문의 경우 총격사건으로 살인사건이 났을 때 살아남은 사람(가해자)이 조사받을 때라도 「범인」이라고 쓰지 않고, 「수사에 항의하기 위해 경찰에 출두했다」고 표현할 만큼 매우 신중하다는 점은 음미해볼 만한 보도자세이다. 특히 사건기사 취재에 있어 신속보도를 위해 수사당국의 발표를 기다릴 수만 없어 독자적인 취재를 해야 될 때가 있고, 결국 사건현장 취재, 관계자들을 통한 탐문취재를 할 경우 자칫 사건관계자의 명예를 훼손하기 쉽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진실하고 정확한 보도를 하기 위해서는 재삼 관계기관에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거의 매년 있는 일이지만 3·1 절특사, 8.15 특사 등 관계당국의 특사조치로 가석방등 은전을 입어 형무소를 나서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 얼굴이 확연히 드러나 보이도록 TV에서 또는 신문사진에서 취재보도하는 예가 통례인데 사실 이러한 취재방법도 문제가 있다고 보며 특정인의 전과 또는 미결이라도 영어의 몸이 뒀었다는 사실을 공표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물론 특정정치인 등 사회의 관심이 있는 인물인 경우는 예외일 수 있다.

● 사생활의 침해 - 사건기사의 경우 등 용의자의 사생활에 관련된 내용을 보도할 필요는 없으나 범죄내용에 따라서는 그 성장과정, 전과, 가족관계 등 사생활의 일면이 공개보도되는 수가 있다. 그럴 경우 그 내용이 설사 진실일지라도 인권침해라는 위법성은 조각될 수 없다.

물론 공공이익을 위해 보도기관에 대한 필요한 한도 안에서 그것이 허용되기는 하지만 무엇이든 다 보도해도 좋다는 것은 아니다.

소년범의 경우 그 이름은 물론 주거·용모 등 본인이라는 것을 추측해서 알 수 있는 사진이나 기사도 보도할 수 없게 금지규정을 둔 것은 장래성있는 소년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데, 간혹 신문에 눈을 가린 소년범의 사진이 또 TV 화면에 뒤로 돌아선 소년들의 영상이 보도되는 예가 있는데, 그것은 과연 무방한 것인지? 생각해 된다.

정신장애자의 본명보도, 그 가족관계 등은 범죄행위에 관련된 경우라도 정신 장애자를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또 장애자의 족의 인권을 존중하는 관점에서 본명을 밝히는 것은 피해야 옳다. 정신장애자가 범죄의 피해자일 경우는 더 말할 여지도 없다.

자살사건의 경우 자살자는 유서가 있는 경우는 모르되 사자무언으로 자신의 처지를 변명할 아무런 능력이 없는 자이다. 미성년자는 제외하고 촉탁살인죄 또는 동반자살로 살인죄가 성립될 경우는 모르되 그 밖의 경우는 저명인사로 사회적 관심이 높다 해도 본인의 명예는 물론 가족의 사생활보호를 위해서도 본명보도는 피해야 될 것이다.

또 사실보도라고 해도 일벌백계를 위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닐 때 사소한 경범죄로 특정한 본명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이라는 면보다는 일부독자의 구미에 영합하는 것으로 보도기관의 정도라고는 볼 수 없다.

● 불법주거침입 - 사건취재를 위해 일선기자들이 흔히 범하기 쉬운 사례로서 불법주거침입의 예를 들 수가 있다.

앞서도 지적했거니와 설사 기사취재를 위한 부득이한 행위라 할지라도 어떤 주거에 들어가자면 주거당사자의 승낙을 받아야 된다. 과연 이와 같은 절차를 다 갖춘 후에 기자들이 취재하고 있느냐? 하는 점은 의문이다.

사건에 관련된 인물의 사진을 입수하기 위해 그 인물이 예컨대 살인사건의 피해자 (피살장소가 자기거주가 아닌 외부일 경우) 기자들은 피해자의 집에 달려가 경황이 없는 가족에게 사진을 요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타사와의 경쟁을 고려해서 그 집에 있는 사진첩을 아예 몽땅 압수해가는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 사실 가족들이 기자들의 출현을 원할 이유도, 사진을 몽땅 내어줄 처지도 아닌데도 일선기자들은 과거의 경우 그와 같은 취재활동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면회를 거절하는 사건참고인의 거주장소에 기자가 반강제적으로 밀고 들어가 인터뷰를 강행하는 사례도 간혹 있던 때이고, 뿐만 아니라 본인이 없는 주거에 들어가 촬영을 하는 예 또한 없지 않았다.

이런 것이 엄격히 말해 주거침입이 되는 것은 물론이나 언론기관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 개연, 더군다나 사건관련자일 경우 법적으로 대항할만한 용기가 없기 때문에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주저하고 마는 것이다.

● 기타 최근에는 TV 화면에 간혹 기사취재, 특히 영상취재와 관련, 그 역기능적 일면을 간혹 엿볼 수 있다 그 한 가지 예가 초상권과 관련되는 점이라고 할까? 인터뷰를 거부하는 개인, 또는 사전에 허락없이 남의 거주지역에 카메라를 들이대는 행위, 분명히 보호해야 할 소년들의 영상(물론 소년들의 비윤리적 일면을 들춰 사회적 경고를 발하기 위한 선의의 취재활동이긴 하나) 이 TV 화면에 비춰지는 예 등은 과연 어떤가? 하는 느낌이 든다.

초상권과 관련해서 형사재판에 회부된 형사피의자라도 초상권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히 말해 언론매체에서 무단히 촬영할 수는 없다고 본다.

다만 8·15 직후 법정에서 자유로운 사진취재활동이 방임되다시피 돼 있던 시기와는 달리 이제는 법정질서 유지 등 이유로 재판부의 허가없이 법정안에서 심리과정에 있는 피고인을 포함 촬영·녹음을 할 수 없게 돼 있어 향간의 이목이 집중됐던 장영자사건공판 당시 보도기관에서는 사진취재가 허용안돼 우리나라 언론사상 처음으로 화가를 동원 재판진행 광경을 스케치하여 보도하는 전례를 남겼던 것은 아직도 기록에 새롭다.

법정안에서의 셔터 누르는 소리, 무비카메라가 돌아가는 소리, 후래쉬의 섬광을 받는 형사 피고인은 물론 재판담당 법관 증인들까지 아울러 자신들을 둘러싼 보도기관의 움직임, 그것이 사회의 이목이라고 느낄 때 피고인의 진술, 증인의 증언에 또 심리과정에 막대한 심리적 영향을 들 것이라는 점에서 재판부는 법정내 사진 촬영을 금할 수 있게 돼 있다.

## VI. 기사취재 현실에 대한 개선방향

기자를 취재함에 있어 기자들은 보도의 정확성과 아울러 보도의 신속성을 요구받고 있다. 물론 바른 모든 기사도 마찬가지로 특히 사건 취재에 있어 당국의 발표사실만 충실하게 보도 하면 명예훼손이나 사생활침해 등 복잡한 법적인 문제와 마주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럴 경우 기자는 메신저로, 보도기관은 관계기관의 홍보역할밖에 못하고 보도기관이 갖는 공공이익을 위한 활동은 소멸 내지 크게 위축되고 말 것이다.

따라서 당연히 당국발표를 보완, 확인하는 취재활동과 아울러 아예 독자적인 취재에 나설 경우도 드물지 않을 것이다.

그럴 경우 기자는 사건관련자들과 직접 만나고 또는 사건관련 자료 등을 통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해서 진실을 파악, 사실을 보도하는데 충실해야 될 것이다.

보도의 신속성에만 치우친 나머지 명예훼손이나 사생활침해 사례를 빚어도 그것은 부득이한 일이 아니냐고 변명할 수는 없다. 그것은 단순한 변명에 불과하며 진실을 추구하는데 전력해야 할 것이다. 설사 진실이라고 믿고 보도한 내용에 착오가 났을 경우라도 진실을 추구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였던 전체적인 취재과정을 밝혀 진실로 밖에 믿을 수 없었던 상당한 이유를 주장할 수 있다면 취재과정이 소홀했다고 자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뉴스의 정확성과 신속성이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요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보도의 자유와 피의자의 자율적 인권보호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본다.

기사취재에 있어 사건기사의 경우 일차적으로 명예훼손을 범하지 않도록 일선기자가 세심한 배려를 해야 될 것이며, 그 다음 데스크에서 또 한번 그러한 배려로 만의 하나라도 착오가 여과돼야 될 것이며, 최종적으로 제목이 기사내용과 벗어나지 않도록, 「비약」하지 않도록, 냉정한 판단을 내려야 될 것으로 본다.

문제는 일선기자로부터 편집자에 이르기까지 언론매체에 종사하는 전문직종의 일꾼들이 높은 윤리의식을 지니고 문제점 해결에 나서야 될 것인데, 그러자면 「언론의 자유」를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는 책임의식이 수반돼야 되며 그것은 어떤 몇몇 사람의 주장이나 각성에서 이뤄질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전체 언론매체관계자들의 자기 수업(말하자면 재교육)과 새로운 자세 정립에 기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본다.

## VII. 맺는말

우리나라의 기사취재 현실과 문제점에 관해서 매우 개괄적인 지적으로 끝났으나 사실 엄격히 따지고 볼 때 물론 많은 점이 시정도 됐고 선진국 언론기관의 그것과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언론매체들도 특히 최근에는 과거 우리나라 언론이 범해왔던 술한 후진적 늪에서 탈피해가고 있는 것만은 확실하다.

그것은 우리 언론이 자율규제의 갖가지 규정을 마련해서 공정, 신속한 보도를 하되 스스로 그 품위를 지키고 언론이 지닌 바 책임을 다하기 위한 스스로의 자세를 뚜렷이 정립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이 점차 해소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의 추세는 시일이 경과할수록 명예훼손, 또는 사생활 침해, 초상권 문제 등으로 언론기관에 대해 개인의 기본권 침해를 보호하려는 경향이 다른 외국과 마찬가지로 거세게 일어날 것만은 확실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특히 일선에서 취재하는 기자일수록, 공익을 위해 봉사하는 기자로서의 품위를 지키고, 자신의 권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소속사의 명예와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직장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자면 사명감에만 치우쳐 자칫 타인의 인권을 훼손하는 결과를 빚는 일이 만의 하나라도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오히려 인권옹호의 편에 섬으로써 거대화되고 있는 보도기능이 가진 시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는데 앞장서야 될 것이다.

주

1) 김철진, 헌법개론. P.397 본문과 주 2.

2) 김철진, 전계서, p.357.

3) 김철류, 전계서, pp.372~373

4) 일본신문협회, 신문편집관계법제연구회편 「법과 신문」, p.154.

- 보성전문 상과

- 서울신문 사회부장, 동아일보 편집국장, KBS 해설주간, 동 연수원장 역임